

## 1. 택배 관리 및 수령 규정

택배 물품은 1층 택배보관소(1층 담임교사실)에 반별로 보관한다.

1. 학생들은 월~토(공휴일 제외) 16시 전후로 1층 택배 보관소 앞 2,3층 게시판 앞에 새로 부착되는 택배 대장을 확인하여 본인의 택배가 있는지 확인하며 불출은 1층 담임교사실에 저녁식사시간(17:40~18:05)에 진행한다.
2. 택배는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타인의 택배를 가져가는 행위는 불허한다. 대리 수령은 팔, 다리 부상 등으로 인해 택배 수령을 부탁을 받은 학생이나 담임교사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위 사항을 제외한 타인의 택배 수령 행위는 절도로 간주,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3. 택배 수령 시 명찰을 필히 착용한 상태로 담당 교사에게 택배 내용물을 점검받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명찰 미착용 시 택배 수령 불가) 부득이하게 명찰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령 시에는, 택배 수령 대장 본인의 이름에 체크 후 수령해야 한다.
4. 고의로 점검을 받지 않고 택배를 수령하는 경우, 택배 수령 대장에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5. 당일 게시된 택배 대장에 본인에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택배의 변질·분실·파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6. 학원에서 소지 금지하는 품목은 택배로도 전달받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배송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로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7. 수령시간 외에 택배를 살펴보거나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3점을 부여하며, 택배 내용물 중 금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점수 5점을 부여한다.

※ 택배 주문 시 반드시 상세 주소란에 반을 표기하여 발송해야 한다.

- 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 16  
HS(반명) 홍길동(이름)